#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15

발의연월일: 2020. 10. 14.

발 의 자:김경만・이성만・황 희

김수흥・김승원・김정호

이병훈・황운하・이규민

송영길 · 김영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 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 합도 영세하고 협상력이 부족하여 이 제도의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 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 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 여야 하는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원활한 조정협의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15일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 법률 제 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협의를 할 수 있다"를 "협의를 직접 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 앙회가 원사업자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 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 당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혅 했 아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 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 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 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 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직접 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3)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

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사업자와협의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